

**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속
우주항공센터 운영 규정**

2024. 2.



**전남대학교
산학협력단**

전남대학교 우주항공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4. 02. 2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우주항공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“운영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- 우주발사체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
- AAM (Advanced Air Mobility) 관련 실용화 기술 개발
- 우주항공 관련 국내외 심포지엄, 학술발표 및 학술교류
-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 및 역할) ① 센터에는 센터장,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우주발사체연구부, 미래항공부, 대외협력부를 둔다.

② 센터장은 본교 교원(전임/비전임) 중에서 관리위원장이 추천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사업부장은 본교 교원(전임/비전임)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학술연구교수, 산학협력중점교수 등을 둘 수 있으며 인사관리는 「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⑥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우주발사체연구부: 우주발사체 관련 연구사업에 관한 업무
- 미래항공부: AAM 관련 연구사업에 관한 업무
- 대외협력부: 센터의 대외협력 및 홍보를 위한 업무

제4조(연구인력) 센터에는 공동연구원, 일반연구원,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1. 공동연구원: 센터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본교 교원(전임/비전임)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 자

2. 일반연구원: 센터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센터장이 임용한 자

3. 연구보조원: 센터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센터장이 임용한 자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센터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부속연구센터 운영 계획 및 장단기 연구계획 수립
2. 부속연구센터 규정의 제·개정 및 개폐
3. 부속연구센터 예산 및 결산
4. 기타 부속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6조(공동 및 집단연구 등) ① 센터 수행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타 기관과 공동 및 집단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과제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지자체, 협력업체와 산·학·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 및 회계) ①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(용역 포함)수주, 각종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② 센터의 재정은 센터 설립 목적 및 역량을 높이는데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④ 센터의 연구비는 「전남대학교 연구비중앙관리지침」에 따라 관리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